

NO.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무형유산원	2014	통 보	-	-	-

## 【제 목】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 1. 근 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에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및검사)에 감독을 한 자는 감독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 지적 내용

### 가. 예정가격조서 미작성 등

국립무형유산원은 '악기로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특별전 도록 및 인쇄홍보물 제작(계약기간 '14.5.12. ~ '14.6.27./계약금액 45,980,000원) 등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결정하고 예정가격(기초금액)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작성·비치하지 않았음.

### 나. 산출내역서(상세내역) 등 착수서류 미징수

국립무형유산원은 '악기로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특별전 도록 및 인쇄홍보물 제작(계약기간 '14.5.12. ~ '14.6.27./계약금액 45,980,000원)', '국립무형유산원 기관 홍보물 국문 추가 제작 및 영문제작(계약기간 '14.6.26. ~ '14.7.2./계약금액 9,515,000원)' 등의 용역 계약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산출내역서·예정공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착수관련 서류를 징수하지 않았고, '특별전 인테리어 및 보조물 제작 설치(계약기간 '14.5.20. ~ '14.6.27./계약금액 78,000,000원)'건의 산출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지 않았음.

### 다. 지급각서 미징수

국립무형유산원은 '악기로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특별전 전시 영상 제작'건에 대해 ○○○○○와 계약(계약기간 '14.4.28. ~ '14.6.13. /계약금액 18,800,000원)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각서를 미징수 하였음.

### 라. 계약 기간 선정 미흡

국립무형유산원은 '악기로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특별전 개최를 위해 '특별전 도록 및 인쇄홍보물 제작(계약기간 '14.5.12. ~ '14.6.27./계약금액 45,980,000원)'과 '특별전 인테리어 및 보조물 제작 설치(계약기간 '14.5.20. ~ '14.6.27./계약금액 78,000,000원)'에 대해 (주)○○○○○○○· (주)◇◇◇◇◇◇◇◇◇와 각각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상기 계약의 목적은 특별전 행사의 홍보와 행사장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모든 계약절차가 행사 전에 완료되어 행사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계약완료일을 특별전 개막 당일인 '14.6.27.로 선정하여 홍보물제작은 '14.6.27. 인테리어 제작설치는 '14.7.14.에 완수검사를 실시하여 상기 계약의 목적인 행사의 홍보와 행사장 설치에 대한 적절한 검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마. 계약변경 미이행 및 검수조서 검수일자 미기입

'특별전 도록 및 인쇄홍보물 제작('14.5.12. ~ '14.6.27./45,980,000원)'의 과업 내용이 변경(포스터 수량 증가, 제본 사양 변경 등 / \*금액변동 없음)되어 '14.6.23. 사업부서(무형유산진흥과)에서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기획운영과)에서는 이를 누락하였음

사업부서에서는 검사·검수를 하면서 계약이 변경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고, 변경요청한 내용대로 검사·검수를 하였으며, 검사조서 작성 시 검사일자를 기입해야 함에도 해당 월만 기입하는 등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함

### 3.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향후 계약업무 처리 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하며, 계약기간 또한 검사검수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NO.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무형유산원	2014	-	감 액	5,159,000	주 의

### 【제 목】 용역 완료 검사에 관한 사항

####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2. 지적 내용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에 대해 주식회사 □□□□□와 계약(계약기간 ‘14.3.27. ~ ‘14.7.25./계약금액 73,700,000원)하였고, ‘14.7.25. 완료계를 제출하였음

국립무형유산원은 상기 용역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 일부사항이 미비하고, 최종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완수한 것으로 ‘14.8.7. 완료 조치하였으나, ‘14.9.2. 현재까지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계산한 결과 5,159,00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음(최종 완료일 : ‘14.9.3.)

### 3.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해당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체상금 5,159,000원을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무형유산원	2014	-	감 액	3,479,810	-

**【제 목】 공사 설계변경 미반영에 관한 사항**

###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및검사)에 감독을 한 자는 감독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 지적 내용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립무형유산원 CCTV설비 구매 및 설치’건에 대해 (주)◆◆◆◆과 계약(계약기간 ‘14.4.25. ~ ‘14.8.23./계약금액 250,500,000원)하였고, ‘14.8.23. 완료계를 제출하였음

(주)◆◆◆◆은 상기 공사 중 CCTV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실시하며 당초 설계도서의 인력 시공 대신 기계를 사용하는 등 당초 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하였으며,

국립무형유산원은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으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시공업체인 (주)◆◆◆◆은 실제 시공된 내역보다 3,479,800원 많은 당초 계약금액(250,500,000원)으로 완료계를 제출하였음.

### 3.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당초 내역과 다르게 시공되어 절감된 3,479,81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NO. 4		<b>감사결과 처분요구서</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국립무형유산원	2014	기관주의	-	-	-

**【제 목】 카드 등 국고금 관리 및 회계직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1. 근 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제114조(현금등의 직접 보관)는 카드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사무의 인계·인수)는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 등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발급받은 정부구매카드(24장)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보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견고한 용기(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개인 서랍에 보관하였고, 국고금 관련 통장과 회계직인을 출납공무원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으며,

'14.3.12.과 '14.6.2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교체하면서 관련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함에도 상호간의 인계인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3.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향후 정부구매카드·국고금 관련 통장 등을 금고에 보관하시고, 회계직 공무원의 변경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NO.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국립무형유산원	2014	통 보	-	-	-

### 【제 목】 기증·기탁 등 무형유산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1.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자료 등 보유 현황

‘14. 8월 말 현재, (단위 : 건, 점)

구 분	기증	기탁	문화재청 (구매, 이관)	민간보조 (구매)	비 고
수 량	1,250건 1,578점	863건 997점	1,356건 1,694점	162건 271점	3,631건 4,540점

#### 2. 지적 내용

국립무형유산원은 2014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기증, 기탁, 구입 등을 통해 총 3,631건, 4,540점의 무형유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에 따라 무형 유산 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동 유산 자료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증, 기탁, 구입 등을 통해 총 3,631건, 4,540점의 무형유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무형유산 자료(3,014건, 3,767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번호가 모두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2014년에 기증·기탁 받은 617건, 773점은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번호가 미부여된 상태로 수장고에 보관·관리되고 있음

또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에는 무형유산 자료를 외부에 대여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의 자체 판단으로 국회, 한국문화원 등 외부기관에 107건 240점을 대여하는 등 무형 유산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14. 8월말 현재 대여 후 미 반납된 무형 유산 자료 : 21건, 38점

### 3.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기증·기탁 등 보관 중인 무형유산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리번호 부여하고, 대여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무형유산 자료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NO. 6		<b>감사결과 처분요구서</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무형유산원	2014	통 보	-	-	-

**【제 목】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

**1. 대관할 수 있는 시설 현황**

- ① 열쭉마루 (대공연장, 400석 규모), ② 열쭉마루 (소공연장, 200석 규모)
- ③ 야외공연장, ④ 어울마루 (국제교류센터 3층, 160명)
- ⑤ 어울마루 (국제교류센터 2층, 세미나 I,Ⅱ, 25~30명)
- ⑥ 전승마루 (워크숍교육공간 2층, 세미나실, 70명)
- ⑦ 열린마루 (아카이브전시공간 2층), ⑧ 누리마루 (기획전시실)

**2. 지적 내용**

국립무형유산원의 시설규모는 연면적 29,615㎡, 건축면적 13,519㎡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공연장, 국제교류센터, 세미나실, 전시공간, 교육 및 연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연, 전시, 교육 등 총 32건 (계획 15건 포함)의 행사를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이 중 26건은 자체 추진행사이고, 6건의 행사는 ◇◇◇◇◇◇◇◇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임

구분	계	공연	전시	교육	행사	비고
2013	7(1)	1	2(1)	3	1	
2014	25(5)	5	7(3)	8(1)	5(1)	15건은 계획임
계	32(6)	6	9(4)	11(1)	6(1)	

※ 괄호안은 외부기관이 주관하여 추진·계획한 행사임 (국립무형유산원과 합동 추진 포함)

외부기관에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교류·활성화 등 국립무형유산원 시설물 건립 목적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나, 2014. 8월말 현재 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이 국유 시설을 민간 등에 무상으로 대관하고 있음

### 3.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시설물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b>감사결과 처분요구서</b>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무형유산원	2014	통 보	-	-	

**【제 목】 공연 사례비 및 교육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1. 근 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강사료나 기타 사례비의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가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 ‘해설이 있는 무형유산 공연’(11.1-11.2 / 2회)과 2014년 ‘토요 상설 공연’(6.21-11.29 / 24회)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기 공연에 참여하는 출연자, 사회자, 스텝 등의 사례금은 별도의 지급 기준 없이 행사 계획 수립 시마다 담당자별로 내부결재를 득하여 소요예산내역서에 따라 출연료 등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

소요예산내역서에 따른 출연료 등 사례금을 확인한 결과, 유사한 행사임에도 보유자의 출연료가 100~200만원, 단체종목의 출연료가 500~700만원 등으로 약 100~200만원의 사례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출 사례비 또한 100~300만원 까지 지급하여 약 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13년부터 2014년 8월말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워크숍’ 등 8개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면서 지급한 외부 강사료의 1시간당 단가는 7만원에서 40만원까지 약 37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비 및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3.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연 출연료 및 교육 강사료 등 외부 인사에 대한 사례비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